



분야 | 산업안전보건
제목 | 안전교육장 임대

당 현장은 지하철 공사 시스템 공사 현장으로써 노반공사가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사용하는 현장으로서 당 현장에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안전교육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별표 2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에서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원료 후 반환받게 되는 비용으로 그 성격상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차 시 발생하는 월 임대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 | 산업안전보건
제목 | 안전검사 관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한 장비에 대해서 ① 법개정 전처럼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지, ②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③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④ 안전검사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09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여 완성검사(2008년에 완성검사 신청)를 한 장비에 대해서 ① 법개정 전처럼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지, ②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③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④ 안전검사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09년 1월 1일 이후 제품심사법개정 적용 후를 한 장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건설기계로 등록이 된 타워크레인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전법에 따라 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제품 또는 그 외의 경우 안전검사의 실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 법에 따른 설계, 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 설치, 사용중인 유해위험기계가구로서 정기검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최초 정기검사 실시시기 이전
 2. 종전 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 : 정기검사 주기도래시 까지
 3. 종전에 정기검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로 안전검사 대상이 된 기계
 - 곤돌라 및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 2009년 6월 30일까지
 - 사출성형기 : 2010년 12월 31일까지
 - 그 밖에 자체검사만 실시하던 기계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한 자체검사를 기준으로 다음 자체검사 실시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 까지
- 또한 안전검사 대상인 크레인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임(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09.1.10후로는 별도의 자체검사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안전검사 주기는 종전의 정기검사 주기에 준하여 검사주기를 설정하였는 바, 사업장에 최초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그 이후 매 2년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건설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매 6개월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분 야 | 산업안전보건

제 목 | 특수건강진단의 “미네랄오일(광물성오일)”의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

1. 특수건강진단의 “미네랄오일(광물성오일)”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 ① 가공유 중에서 식물성오일을 제외한 광물성오일 취급자(광물성오일을 사용하여 절삭, 연삭 등의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만 실시하면 되는지요?
 - ② 아니면 작동유, 스피들유등 광물성오일을 사용하는 가공 이외의 작업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한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속가공유(규칙별표 12의2의 화학적유해인자 금속가공유(광물성오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은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작업형태에 따라서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노출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합니다.



분 야 | 노무안전

제 목 | 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관련하여

-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미 3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에 의한 서면 촉구에 대하여 나머지 12일의 연차 휴가 중에서 5일에 대해서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그에 따라 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 1. 이와 같은 경우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